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 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1. ~ 10. 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530호
----------	--------

발의연월일 : 2021. 9. 30.

발의자 : 박계수 · 이복남 · 박혜정
박종호 · 강형구 · 장숙희
이영란 의원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58조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 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순천시 지역 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자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의)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4.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5.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6.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사업
8.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9.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지원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시장은 장애인복지 기관단체와 협조하여 공무원, 학생, 그 밖의 일반 시민 등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7조(종합복지서비스 제공)

-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사업)

-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발달지원사업예산지원 사항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9,794,835	1,958,967	1,958,967	1,958,967	1,958,967	1,958,967
세입(a)						
세출(b)	9,794,835	1,958,967	1,958,967	1,958,967	1,958,967	1,958,96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9,794,835	1,958,967	1,958,967	1,958,967	1,958,967	1,958,967
국 비	6,857,055	1,371,411	1,371,411	1,371,411	1,371,411	1,371,411
도 비	881,335	176,267	176,267	176,267	176,267	176,267
시 비	2,056,445	411,289	411,289	411,289	411,289	411,289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사업 개요
계	1,958,967 국 1,371,411 도 176,267 시 411,289	
*발달재활서비스지원	993,600 국 695,520 도 89,424 시 208,656	-사업대상: 만 18세 미만 지적, 자폐성 아동 등 -사업내용: 언어, 청능, 미술음악 재활치료 서비스제공 -지원기준: 중위소득 180%차등지원
*언어발달지원	8,800 국 6,610 도 792 시 1,848	-사업대상: 만 12세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보호자가 뇌병변, 언어 지적, 자폐성 장애 -사업내용: 언어, 청능, 수화지도 서비스 제공 -지원기준: 중위소득 120%차 등지원
*발달장애인부모장담지원	3,811 국 2,667 도 344 시 800	-사업대상: 지적, 자폐장애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 -사업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기준: 월 200천원 이하
*발달장애인지간활동서비스지원	739,169 국 517,418 도 66,525 시 155,226	-사업대상: 만 18세~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사업내용: 2~4인 소그룹을 구성하여 교육, 직업훈련, 취미, 여가서비스 제공 -지원기준: 소득무관, 본인부담금 없음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213,137 국 149,196 도 19,182 시 44,759	-사업대상: 만 12세~만 18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사업내용: 2~4인 소그룹 구성하여 교육, 관람, 취미, 여가서비스제공 -지원기준: 소득무관/ 본인부담금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박계수 의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협의)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 2016. 6. 4] [법률 제16736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아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 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 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타 지자체 관련 조례 현황 : 120지자체

- 광역시·도 : 80개소

- 시·군·구 : 40개소 (전남 : 4개소 -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531호
----------	--------

발의연월일 : 2021. 9. 30.

이복남 · 박계수 · 박종호

발 의 자 : 김미애 · 이현재 · 정홍준

김영진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한국수화언어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를 발전시키고 수화언어 사용을 보장하여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 “농인등”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이하 “농인”이라 한다)과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하 “한국수어사용자”라 한다)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등”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순천시의회 및 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이에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
2.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및 사용환경의 개선
3.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한국수어 교육 및 홍보
5.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

6.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시 「한국수화언어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의견청취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사업
2.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3. 농인들의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사업
4. 공공행사 및 공공시설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 사업
5.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사업
6.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2. 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자막시스템 및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③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6조(사업추진)

-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정보제공, 농인들의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예산의 지원)

-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농아인협회 운영지원 사업
- 순천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전남 동부권 농아노인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
- 장애인 수어교실 운영 사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2,374,781	-456,334	-465,461	-474,770	-484,265	-493,951
세입(a)	0	0	0	0	0	0
세출(b)	2,374,781	456,334	465,461	474,770	484,265	493,951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2,374,781	456,334	465,461	474,770	484,265	493,951
도 비	641,148	123,167	125,675	128,188	130,751	133,367
시 비	1,733,633	333,167	339,786	346,582	353,514	360,584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2021년 기준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456,334		
순천 농아인 협회 운영 지원	9,000	750천원*12월	
순천시 사랑의 수어 경연대회	3,000	3,000천원*1회	
영호남 농아인 하계수련회 참석 지원	1,000	20천원*50명*1회	
농아인의 날 기념 및 전국농아인대회 참석 지원	1,000	20천원*50명*1회	
농아인협회 기능보강	2,500	2,500천원*1식	
동부권 농아노인복지센터 운영 지원	171,000	42,750천원*4회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258,834	64,708천원*4회	
장애인 수어교실 운영 지원	10,000	10,000천원*1식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이복남 의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협의)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 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1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한국수어 통역사,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타 지자체 한국수어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91개 지자체**

- 광역시·도 : 26개소

- 시·군·구 : 65개소 (전남 : 2개소 -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53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9. 30.

1. 제정이유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경영 체제 도입을 통한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함
-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단 설립) 목적, 법인격, 자본금, 정관 등(안 제1조~제6조)
- (임원 및 직원) 임원, 임기, 이사회, 임면 등(안 제7조~제18조)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회 설치·구성, 운영 등(안 제19조~제23조)
- (공단 대상사업) 사업의 범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안 제24조~제25조)

※ (주민공청회 의무화) 신규 시설 등 위탁 시 의회 동의 전 주민공청회 개최

- (재무회계) 회계처리, 수입 및 정산, 결산 등(안 제26조~제31조)
- (관리감독) 감독, 검사 및 보고, 의회 출석 등(안 제32조~제34조)
- (기타사항) 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등(안 제35조~제39조)

※ (조례시행일) 2022년 7월 1일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제출자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있음(입법예고 : 2021. 8. 31. ~ 9. 23.)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전국민주 연합노동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9조(이사) 상임·비상임 이사의 정수가 명확하지 않음. 【 검토내용 】 안 제7조에 따라 이사 등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함. • 안 제24조제1항제6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형식상 절차에 불과한 주민공청회를 통한 시의회 제출에 대해 반대함. 【 검토내용 】 지방공기업 설립기준(행정안전부, 2021.03.23.)에 따라 설립 후 기존 사업과 내용적으로 상이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실시하여야 함. • (기타의견) 시설 이용하는 시민 만족도 높고 직접 수행을 원함. 공공성과 효율성 문제,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순천시립추모공원과 공영·노상주차장 타당성 재검토, 보고서에 17억원 누락시키고 인건비 뺏튀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간접경영은 민간위탁과 동전의 양면일 뿐. 【 검토내용 】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기 설명한 내용임. 	미반영
순천시 자치단체 노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20조 추천위원 구성 중 시장이 2명 추천, 시장이 임면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총 7명 중 4명을 시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면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함. 【 검토내용 】 안 제20조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임. • 안 제24조제1항제6호에 근거 시의회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어 반대함. 【 검토내용 】 안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민공청회와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미반영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9. 14.(여성가족과-1922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9. 2.(기획예산실-1256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8. 31.(순천시 공고 제2021-2025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9. 24.(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순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순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순천시(이하 “시” 라 한다)는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 및 납입재산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8.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공단체 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 공단의 운영이 부실한 때에는 이사장의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자치행정국장 및 일자리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시 소속 공무원을 당연직 비상임감사로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당연직 감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인 시의 국장과 제10조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라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평가 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②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이사회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민법」에 따른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임원추천위원회

제19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 제58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설치·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20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제19조에 따른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영 제56조의3에 따라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
3.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② 당연직 이사 또는 임원 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제1항제3호와 관련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단의 임·직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시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1조(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단은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과 시의회

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임원후보의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공단 임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8항 및 영 제56조의4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 공모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의결 즉시 임명권자인 시장 또는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이사장은 추천된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공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출할 수 있다.

1. 추천위원회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 및 여비

2. 참고인(후보자 포함) 등의 면접·의견청취 등을 위한 출석의 실비보상

3. 임원 후보자의 모집·조사·협조 및 용역 등을 위한 경비

제4장 사 업

제24조(사업의 범위)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체육사업(문화건강센터 수영장)

2. 관광사업(에코촌 유스호스텔, 자연휴양림, 드라마촬영장)
3. 교통사업(공영·노상주차장, 시청사 주차장)
4. 장묘시설(순천시립추모공원 및 공원묘지)
5.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단에 제1항제6호에 따라 신규 시설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설 및 사업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별 조례에서 공단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경우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서의 추가사업 또는 동일 부지 내 구조물을 수반하거나 부지 확장의 경우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 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5장 재무회계

제2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9조(수입 및 정산) ① 공단은 제24조에 따른 사업 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 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을 시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30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 제31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공단이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에 규정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감사 등)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종합감사(監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감사(監査)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다.

제34조(의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5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매 사업 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준하여 시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단이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및 제규정) 최초 공단 설립에 따른 정관·제규정 중 시장이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4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 둔다.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54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9. 30.

1. 제정이유

- 순천시민의 치매예방,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치매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에 필요한 사항 및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치매관리에 필요한 계획 및 사업 규정(안 제4조~제8조)
-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 치매관리사업 관련 기관단체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20조)
-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4. 6. ~ 4. 26.)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4. 5.(여성가족과-746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2. 25.(보건사업과-3237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3. 25.(기획예산실-447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4. 6.(순천시보건소 공고 제2021-7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9. 17.(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순천시민의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를 말한다.
3.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관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선별검사(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전문의 진찰, 치매신경인지검사,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치매정밀검진, 치매치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순천시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순천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사례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인력의 확보) ① 시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준은 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실태조사는 상반기에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치매환자 등록관리)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센터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2. 치매치료비 및 가족 지원 사업
3.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 위생 및 건강관리 물품, 실종예방을 위한 장비 등 지원
4. 치매환자와 가족의 안전 환경 조성
5.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장비·물품 지원
6. 지역사회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 지원
7.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훈련비용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원대상자) ① 시장은 순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소 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진 및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지원)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치매정밀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진비용은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에 지원한다.

제13조(지원절차 및 방법) ① 시장이 치매정밀검진을 의뢰하여 검진을 실시한 전문의료기관은 그 검진을 실시한 다음 달 말까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라 치매치료를 받고 해당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품내역을 포함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센터를 통해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전문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순천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에 대한 자문
2.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 등

제1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제12조(비용지원)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치매정밀검진 및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정밀검진비용은 시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에 지원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 치매정밀검진비(진단검사, 감별검사) 지원
 - (1단계)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2단계)감별검사 : 상한 8만원
- 치매치료관리비(진료 및 약제비) 지원 확대
 - 현행 선정기준(소득기준) 탈락자 추가 지원(2022. 1.)
 - 중위소득 기준 적용(120%이하) ⇒ 전 시민 확대
 - 치매치료관리비 : 상한 월 3만 원(연 36만 원)

○ 치매환자 현황 및 증가 추이(순천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치매유병률(%)	11.1	10.94	11.1	11.25
65세이상 인구수(명)	39,791	42,273	43,930	43,094
추정치매환자(명)	4,417	4,627	4,627	4,848
등록환자(명)	2,735	3,109	3,328	3,542
등록률(%)	61.91	67.19	71.92	73.06

※ 치매유병률(추정치매환자/65세이상 노인인구), 등록률(등록환자/추정치매환자), 출처(중앙치매센터)

○ 진단·감별검사 현황(연인원)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추정치매환자	4,191	4,417	4,627	4,627	4,848	
진단검사	-	410	300	257	283	
감별검사	2	278	274	235	271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추정치매환자(전라남도)	45,169	47,200	48,931	50,867	49,719	
추정치매환자(순천시)	4,191	4,417	4,627	4,627	4,848	
지원대상자 (중위소득 120%이하)	125	341	599	1,102	1,150	
지원제외대상자 (중위소득 기준초과)	4,066	4,076	4,028	3,525	3,698	

○ 치매치료관리비 추가지원 대상자 규모

(단위 : 명)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비고
추가지원 대상자	3,698	3,767	3,837	3,908	3,98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9,159,840	-1,710,720	-1,767,600	-1,828,080	-1,892,520	-1,960,920
세입(a)	-	-	-	-	-	-
세출(b)	9,159,840	1,710,720	1,767,600	1,828,080	1,892,520	1,960,92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9,159,840	1,710,720	1,767,600	1,828,080	1,892,520	1,960,920
국 비	1,214,820	207,540	223,560	241,200	260,640	281,880
도 비	293,166	48,006	52,812	58,104	63,936	70,308
시 비	743,454	123,894	135,108	147,456	161,064	175,932
시 비 (추가확보)	6,908,400	1,331,280	1,356,120	1,381,320	1,406,880	1,432,8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치매정밀검진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사업기간 : 2022년 1월 이후
- 산 출 액(5년) : 9,159,840천원
- 산출근거
 - 2022년도 예산

구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누계	1,710,720		
정밀검진비(진단·감별검사)	59,400	(진단검사)150천원×25명×12월 (감별검사) 80천원×15명×12월	국, 시
(기존)치매치료관리비	320,040	30천원×889명×12월	국, 도, 시
(추가)치매치료관리비	1,331,280	30천원×3,698명×12개월	시비

- 2023년도 예산

구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누계	1,767,600		
정밀검진비(진단·감별검사)	59,400	(진단검사)150천원×25명×12월 (감별검사) 80천원×15명×12월	국, 시
(기존)치매치료관리비	352,080	30천원×978명×12월	국, 도, 시
(추가)치매치료관리비	1,356,120	30천원×3,767명×12개월	시비

- 2024년도 예산

구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누계	1,828,080		
정밀검진비(진단·감별검사)	59,400	(진단검사)150천원×25명×12월 (감별검사) 80천원×15명×12월	국, 시
(기존)치매치료관리비	387,360	30천원×1,076명×12월	국, 도, 시
(추가)치매치료관리비	1,381,320	30천원×3,837명×12개월	시비

• 2025년도 예산

구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누계	1,892,520		
정밀검진비(진단·감별검사)	59,400	(진단검사) 150천원×25명×12월 (감별검사) 80천원×15명×12월	국, 시
(기존)치매치료관리비	426,240	30천원×1,184명×12월	국, 도, 시
(추가)치매치료관리비	1,406,880	30천원×3,908명×12개월	시비

• 2026년도 예산

구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누계	1,960,920		
정밀검진비(진단·감별검사)	59,400	(진단검사) 150천원×25명×12월 (감별검사) 80천원×15명×12월	국, 시
(기존)치매치료관리비	468,720	30천원×1,302명×12월	국, 도, 시
(추가)치매치료관리비	1,432,800	30천원×3,980명×12개월	시비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순천시보건소 보건사업과 과장 이재왕(☎ 749-6468)
 치매관리팀장 김은영(☎ 749-3101)
 담당자 김주연(☎ 749-3103)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3532호
----------	--------

발의연월일 : 2021. 9. 30.

발 의 자 : 김미애 · 이현재 · 이복남 의원

1. 제안이유

- 순천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점자의 효력 및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 안 제6조)
- 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안 제7조)
- 점자발전세부계획의 수립(안 제8조)
- 점자의 보급과 지원 및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안 제9조 ~ 안 제10조)
- 점자문화의 확산 및 한글 점자의 날(안 제11조 ~ 안 제12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및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3조 ~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순천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왜곡·첨가·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사용되는 문자로,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에 소속된 기관은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

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①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소유·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자발전세부계획의 수립) 시장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순천시 점자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②시장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과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행

사인 경우 필요에 따라 점자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 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진행상황 등을 시각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할 수 있다.

제10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시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소관 공기업의 정기간행물·예산서·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 제15조에서 정한 한글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①시장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자 관련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교정사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점자 관련 전문인력

제15조(포상)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제7조 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제9조 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12조 한글 점자의 날,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5조 포상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 어려움

5. 작성자

김미애 의원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 고

관련법령

점자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9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왜곡·첨가·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 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8.>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점역·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체본기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들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한글 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점자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 조사)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35
----------	------

발의연월일 : 2021. 9. 30.

발 의 자 : 김미연 · 오행숙 · 정홍준
이영란 · 남정옥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농어촌 인력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및 지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수반

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관리책임부서: 농업정책과

연락처: 061-749-866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촌 인력”이란 법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자가 농어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촌인력지원센터”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어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농어촌인력난 해소와 농어업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순천시 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농어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어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어촌 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농어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2. 농어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3. 농어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참고자료

□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 11. (생략)

2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도내 2 / 도외 20)

연 번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
1	도 내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0.27.
2		화순군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08.06.
3	도 외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07.11.
4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06.04.
5		거창군 농어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2019.10.08.
6		문경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06.03.
7		밀양시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2016.04.14.
8		보령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09.30.
9		서산시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01.
10		연천군 농어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04.08.
11		영동군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07.31.
12		예천군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11.21.
13		옥천군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14.
14		완주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2015.12.28.
15		울진군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12.15.
16		의성군 농어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12.27.
17		익산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2020.11.13.
18		제천시 농어촌인력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2.05.
19		창녕군 농어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2016.03.25.
20		함양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2015.02.26.
21		합천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2016.04.15.
22		포항시 농어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6.01.

순천시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및 지원 등)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시행지침 기준
 - 운영현황 : 1개소 80,000천원(센터운영비, 인력운영비)
 - 재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도·시비) 5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총 비용	400	80	80	80	80	80
세출	소계	400	80	80	80	80
	국비	200	40	40	40	40
	도비	60	12	12	12	12
	시비	140	28	28	28	28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도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400	80	80	80	80	80
국 비	200	40	40	40	40	40
지방비(도·시비)	200	40	40	40	40	4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2021년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시행지침

- 총 소요예산(지방비) : 40백만원(1년)
 - 개소당 80백만원 × 1개소 × 50% 지원
 - 센터운영비, 인력운영비에 관한 비용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3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9. 30.

1. 개정이유

-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정관 개정에 따른 센터 명칭과 주요 사업 등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센터 명칭 변경(안 제2조, 제3조)
 -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 “법인은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삭제
→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로 한다” 신설
- 사업 내용 변경(안 제6조)
 - 천연물 의약소재 →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 연구개발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수익사업 등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9. 8. ~ 9. 28.)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9. 13.(여성가족과-1910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9. 9.(기획예산실-1295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9. 8.(순천시 공고 제2021-2079호)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천연물 의약소재 조사, 발굴, 개발 등”을 “지역의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발굴, 보존, 개발”로, “극대화하고 제약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양성”을 “극대화하고, 바이오 헬스케어소재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인재 일자리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으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을 “바이오 헬스케어”로 한다.

제2조 중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를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로 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조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의약소재” 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
3.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연구 개발 사업
4.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개발 인력 등 지역인재 일자리창출 사업
5.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개발 우수 연구원 확보프로그램 지원 사업
6. 지역 바이오 헬스케어산업 기획·평가 사업
7. 순천시에서 의뢰한 연구 개발 사업
8.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식품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및 화장품제조 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수익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재단법인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천연물 의약소재 조사, 발굴, 개발 등을 통해 천연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제약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하여 순천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법인격) 순천 <u>천연물 의약소재 개발연구센터</u>(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p> <p>제3조(설립) ① 법인은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②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u>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p> <p>제6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지역의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발굴, 보존, 개발----- 극대화하고, 바이오 헬스케어소재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인재 일자리창출과 지역 경제발전----- 바이오 헬스케어 -----</u> -----.</p> <p>제2조(법인격) --- <u>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u>----- -----.</p> <p>제3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u>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u>로 한다.</p> <p>제6조(사업) ----- -----.</p>

<신 설>

1. 천연물 의약소재 조사, 발굴 및 보존 개발사업
2. 천연물 의약소재 등의 제약 및 기능성 식품산업의 연구 개발 사업
3. 천연물 의약소재 개발 인력 등 지역인재 양성 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5. (생략)

1.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

2. -----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

<삭 제>

3.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연구 개발 사업

4.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개발 인력 등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 사업

5.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개발 우수 연구원 확보프로그램 지원 사업

6. 지역 바이오 헬스케어산업 기획·평가 사업

7. 순천시에서 의뢰한 연구 개발 사업

8.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식품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및 화장품제조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수익 사업

9. 10.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4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9. 30.

1. 개정이유

- 팔마국궁장 명칭을 16세기부터 이어져 온 순천의 활터 '환선정'으로 변경하여 순천 활쏘기 명맥을 유지하고 '환선정'의 역사성을 보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명칭 변경 : 팔마국궁장 → 환선정(안 별표 1, 별표 2)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9.2.~9.23.)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9. 8.(여성가족과-1884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9. 10.(기획예산실-1300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9. 2.(순천시 공고 제2021-2047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9. 24.(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 “팔마국궁장” 을 “환선정” 으로 한다.

별표 2 가목 전용기본사용료, 같은 목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 중 “팔마국궁장” 을 각각 “환선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치	규 모			
		부지면 적	경기장 면 적	건 물 연면적	주요시설
(생 략)	(생 략)	(생 략)			
<u>팔마국궁장</u>		6,395㎡	5,049㎡	484.94㎡	사대수 28개
(생 략)		(생 략)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치	규 모			
		부지면 적	경기장 면 적	건 물 연면적	주요시설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u>환선정</u>		6,395㎡	5,049㎡	484.94㎡	국궁장, 사대수 28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2]

사용료 및 이용료(제10조 관련)

가. 시설물 사용료

○ 전용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일반행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생략)	(생략)	(생략)			
<u>팔마국공장</u>	3시간	20,000	30,000	-	-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일반인		학생·군인·단체		어린이		65세 이상	
		1회 사용	월회원	1회 사용	월회원	1회 사용	월회원	1회 사용	월회원
(생략)	(생략)	(생략)							
팔마국공장	1회 2시간	1,500	30,000	1,200	24,000	-	-	-	-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개 정 안

[별표 2]

사용료 및 이용료(제10조 관련)

가. 시설물 사용료

○ 전용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일반행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 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일반행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u>환선정</u>	3시간	20,000	30,000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일반인		학생·군인·단체		어린이		65세 이상	
		1회 사용	월회원	1회 사용	월회원	1회 사용	월회원	1회 사용	월회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환선정	1회 2시간	1,500	30,000	1,200	24,000	-	-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4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9. 30.

1. 개정이유

- 팔마국궁장 명칭을 16세기부터 이어져 온 순천의 활터 '환선정'으로 변경하여 순천 활쏘기 명맥을 유지하고 '환선정'의 역사성을 보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시설 명칭 변경 : 팔마국궁장 → 환선정(안 별표 1, 별표 2)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9.2.~9.23.)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9. 8.(여성가족과-1884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9. 10.(기획예산실-1300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9. 2.(순천시 공고 제2021-2047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9. 24.(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 “팔마국궁장” 을 “환선정” 으로 한다.

별표 2 가목 전용기본사용료, 같은 목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 중 “팔마국궁장” 을 각각 “환선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치	규 모			
		부지면 적	경기장 면 적	건 물 연면적	주요시설
(생 략)	(생 략)	(생 략)			
<u>팔마국궁장</u>		6,395㎡	5,049㎡	484.94㎡	사대수 28개
(생 략)		(생 략)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치	규 모			
		부지면 적	경기장 면 적	건 물 연면적	주요시설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u>환선정</u>		6,395㎡	5,049㎡	484.94㎡	국궁장, 사대수 28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2]

사용료 및 이용료(제10조 관련)

가. 시설물 사용료

○ 전용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일반행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생략)	(생략)	(생략)			
<u>팔마국공장</u>	3시간	20,000	30,000	-	-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일반인		학생·군인·단체		어린이		65세 이상	
		1회 사용	월회원	1회 사용	월회원	1회 사용	월회원	1회 사용	월회원
(생략)	(생략)	(생략)							
<u>팔마국공장</u>	1회 2시간	1,500	30,000	1,200	24,000	-	-	-	-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개 정 안

[별표 2]

사용료 및 이용료(제10조 관련)

가. 시설물 사용료

○ 전용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일반행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 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일반행사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u>환선정</u>	3시간	20,000	30,000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이용 및 연습시 기본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일반인		학생·군인·단체		어린이		65세 이상	
		1회 사용	월회원	1회 사용	월회원	1회 사용	월회원	1회 사용	월회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환선정</u>	1회 2시간	1,500	30,000	1,200	24,000	-	-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54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9. 30.

1. 제정이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 시책 추진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치유농업 기본계획의 수립, 치유농업 육성 지원(안 제4조~제5조)
- 치유농업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자문단원의 임기 및 해촉, 자문단장의 직무, 자문단의 운영 등(안 제6조~제11조)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8. 27. ~ 9. 16.)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8. 13.(여성가족과-17034)
- 예산부서 심의필 : 2021. 7. 30.(농업정책과-9671)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8. 25.(기획예산실-12063)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8. 27.(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1-8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9. 24.(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순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치유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7.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순천시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마을·치유농장의 조성 및 운영
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등) 시장은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순천시 치유농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유지한다.

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치유농업(원예, 동물 등)관련 분야 대학교수
3. 치유농업 실행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민간 협력기관(보건·복지·교육·재활·심리·치료 등)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자문단원의 임기)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자문단원의 임기는 전임자문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자문단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단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자문단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자문단장의 직무)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단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치유농업 육성 지원)
 -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치유농업 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1,184,000	-236,800	-236,800	-236,800	-236,800	-236,800
세입(a)	-	-	-	-	-	-
세출(b)	1,184,000	236,800	236,800	236,800	236,800	236,8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1,184,000	236,800	236,800	236,800	236,800	236,800
국비	255,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도비	-	-	-	-	-	-
시비	929,000	185,800	185,800	185,800	185,800	185,800
자체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기타(민자 등)	-	-	-	-	-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대상사업 : 3개 단위사업

○ 산출액(2021년) : 236,800천원

○ 산출근거(2021년)

- 치유농장 육성 지원 : 64,500천원 × 3개소 × 80% = 154,800천원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 60,000천원 × 1개소 = 60,000천원
- 치유농업 교육 과정 운영 : 1,100천원 × 20회 = 22,000천원
 - (전문 강사수당) 150천원 × 4시간 × 20회 = 12,000천원
 - (교육운영비) 사무관리비 6,000천원 + 현장견학비 4,000천원 = 10,0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 : 해당없음

8. 작성자(참여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과장 박주봉(☎8666)
농촌활력팀장 이해정(☎8703)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4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9. 30.

1. 개정이유

-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진정성립의 확인) 및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 의무 규정 삭제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 행정안전부 2020년 3차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2. 주요내용

- 수탁자와 협약 시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는 부분 삭제(안 제8조제1항)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356조 및 제358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8. 24. ~ 9. 13.)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8. 13.(여성가족과-1705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8. 9.(기획예산실-1135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8. 24.(순천시 공고 제2021-9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9. 17.(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협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APC 관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u>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u> <u>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u></p> <p>② ~ ④ (생략)</p>	<p>제8조(협약의 체결 등) ① ----- ----- ----- <u>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형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536호
----------	--------

발의연월일 : 2021. 9. 30.

발 의 자 : 강형구 · 장숙희 · 박중호
이현재 · 박혜정 · 박계수 의원

1. 제정이유

- 깨끗한 물은 음용하는 것 외에도 친수 공간 조성에 필요한 중요 요소로써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와 감시, 정화활동 등은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임.
- 따라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물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 2조)
- 나. 물환경 보전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안 제4, 5조)
- 다. 물환경 보전활동의 지원사업 (안 제6조)
- 라. 보조금의 반환 등 기타사항 (안 제7 ~ 11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5. 예산상황 : 붙임(비용추계서 첨부)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순천시 공공수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수거 및 정화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물환경의 개선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2.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향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3. “폐기물”이란 순천시 공공수역에 버려진 폐비닐, 폐로프, 폐어구,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다) 등 각종 쓰레기를 말한다.
4. “수질보전활동”이란 순천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순천시에서 인정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발생을 예방하고 수거·정화 등의 처리를 위한 물환경 보전 관리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름답고 깨끗한 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수역에서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수역 내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질보전활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순천시 공공수역 내 폐기물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깨끗한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공공수역 내 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정화 등 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생태계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6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2(물환경 연구·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안 제5조(실태조사)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공공수역 내 각종 수질오염물질의 수거 및 정화 등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750,000	3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세입(a)	-	-	-	-	-	-
세출(b)	750,000	3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비	750,000	3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보조금	750,000	3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 산출근거

【 해양 】 150,000천원

- (인건비) 11개 어촌계 * 4명 * 3일 * 12개월 * 40,000원 = 63,360천원
- (폐기물처리) 200t * 418,000원/t = 83,600천원

【 하천 · 호소 · 저수지 등 】 30,000천원

- (정화활동) 5,000천원/회 * 6회 = 30,0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강형구 의원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조례안

(강형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537호
----------	--------

발의연월일 : 2021. 9. 30.

발 의 자 : 강형구 · 장숙희 · 박종호
이현재 · 박혜정 · 박계수 의원

1. 제정이유

- 배달 음식 활성화로 다량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 우리 시 내 발생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 2조)
- 나. 시장·시민의 책무 (안 제4, 5조)
- 다. 활성화 시책의 수립·실태조사 등 (안 제6, 7조)
- 라. 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안 제8, 9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붙임(비용추계서 첨부)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순천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

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아이스팩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순천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이스팩 수집 및 재활용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주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사업
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4.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관련 교육,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정부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

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참고 2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순번	자치단체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경기도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2021.7.14.	
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2021.7.9.	
3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2021.9.24.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2021.4.30.	
5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2021.6.7.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2021.7.22.	
7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2021.7.12.	
8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2021.9.23.	
9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2021.9.24.	
10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2021.6.24.	
11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2021.8.2.	
12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2021.3.15.	

찬성자 서명부

-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안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안 제7조(실태조사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안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사용 활성화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130,000	1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세입(a)	-	-	-	-	-	-
세출(b)	130,000	10,000	30,000	30,000	30,000	3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시비	130,000	10,000	30,000	30,000	30,000	3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보조금	130,000	1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산출근거

▪ 300원 / 개(처리비) * 100,000개(1년 처리량) = 30,000천원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4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9. 30.

1. 개정이유

-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시행(2021. 7. 5.)에 따른 주요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서 신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4조제1항)
- <신설>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심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제5호)
- 제6조제3항제3호 중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을 “시각·공간·제품·유니버설·범죄예방 디자인” 으로
- 제13조제2호 중 “나이” 를 “연령” 으로, “국적” 을 “문화적 배경” 으로, “쾌적하게” 를 “편리하게”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8조” 를 “제21조” 로 개정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7. 28. ~ 8. 17.) 결과 : 의견제출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8. 2.(여성가족과-1616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7. 21.(기획예산실-1040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7. 28.(순천시 공고 제2021-1772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9. 17.(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8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시각·공간·제품 디자인”을 “시각·공간·제품·유니버설·범죄예방 디자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호 중 “나이”를 “연령”으로, “국적”을 “문화적 배경”으로, “쾌적하게”를 “편리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8조”를 “제21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공공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1. (생략)</p> <p>2. <u>나이</u>, <u>성별</u>, <u>장애 여부</u>, <u>국적</u>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u>쾌적하게</u> 이용할 수 있을 것</p> <p>3·4. (생략)</p> <p>5. <u>제18조</u>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u>」 제13조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 등에 관한 사항</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연령</u>----- <u>문화적 배경</u> ----- ----- <u>편리하게</u> ----- -</p> <p>3·4. (현행과 같음)</p> <p>5. <u>제21조</u>----- -----</p>
--	--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4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9. 30.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업무와 관련하여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과제로 ‘현장조사 등의 대행건축사 선정방법 개선’이 권고됨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행건축사가 선정되도록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선정 시 순천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정한 차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조정(안 제21조제2항)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8. 27. ~ 9. 16.) : 의견 없음
 - 순천지역건축사회 의견수렴 : 2021. 8. 27.(건축과 -41460)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9. 17.(여성가족과-19602)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9. 16.(기획예산실-13390)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8. 27.(순천시 공고 제2021-1998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9. 24.(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4호에 의한” 을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으로, “위한” 을 “위해” 로, “건축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를 “건축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장이 순천지역건축사협회” 를 “전라남도지사가 작성·관리 중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활용하여 건축사협회” 로, “당해건축물” 을 “해당 건축물” 로, “지정한다” 를 “선정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 시장이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고자” 를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정하고자” 로, “순천지역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지정 및 선정절차” 를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선정 절차”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생략)</p> <p>②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시장이 순천지역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직접 선정하되 당해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의 건축사로 지정한다.</p> <p>2. 제1호에 의하여 시장이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고자 할 때 순천지역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지정 및 선정절차를 따로 둘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 위해 ----- 건축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p> <p>1. 전라남도지사가 작성·관리 중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활용하여 건축사협회----- 해당 건축물----- 선정한다.</p> <p>2. -----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정하고자 -----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선정 절차-----.</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54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1. 9. 30.

1. 개정이유

- 상위법 불부합 내용과 휴양림 입장료 무료 대상자를 정비하고, 휴양림 숙박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휴관일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관련 법령 조항 변경(안 제1조)
 - 제14조와 제17조 → 제14조와 제21조의5
- 휴관일 지정(안 제4조제2항)
 - 휴관일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로 지정하여 숙박동 및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및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입장료 면제 대상 추가(안 제7조, 별지 3)
 -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정비계획에 의거 근거 규정 정비
 - 8개 법령 해당자(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

3. 개정안 : 별첨

- ## 4. 관련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1. 8. 27. ~ 9. 16.)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8. 30.(여성가족과-1797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1. 8. 26.(기획예산실-1219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1. 8. 27.(순천시 공고 제2021-1993호)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필 : 2021. 9. 24.(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7조” 를 “제21조의5”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휴양림의 이용시간)” 을 “(휴양림의 이용시간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용시간을” 을 “이용시간은” 으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휴양림의 정기휴관일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제5조 중 “〔별표1〕” 을 “별표 1” 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외하고는〔순천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입장료의 면제) 시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단서 중 “〔별표 2〕” 를 “별표 2”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항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사항은〔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입장료 면제(제7조 관련)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목의 면제 대상자
 - 가. 유공자와 배우자
 - 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 다. 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 나. 의사자 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 다.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2.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13.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 14. 해당 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17조에 따라 순천시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휴양림의 이용시간) 휴양림의 이용시간을 하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유료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 제21 조의5----- ----- -----.</p> <p>제4조(휴양림의 이용시간 등) ① -- - 이용시간은 ----- ----- -----. ----- -----.</p> <p>② 휴양림의 정기휴관일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p>
<p>제5조(입장료 및 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 및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p>	<p>제5조(입장료 및 사용료) ----- ----- 별표 1----- -----.</p>
<p>제6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 ③ (생략)</p> <p>④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p>	<p>제6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순천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⑤ (생략)

제7조(입장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

-----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입장료의 면제) 시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 숲선도원

14. 해당 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2」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휴양림의 운영 및 위탁) ① (생략)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

제14조(사용료의 반환) -----
-----.

----- 별표 2 -----
-----.

제16조(휴양림의 운영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
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신 설>

----- 사항은 「순천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별표 3